

電子資金去來에 대한 法的 對應

孫 晋 華*

차 례

- I. 정보화와 금융거래의 변화
- II. 전자자금이체거래
 - 1. 전자자금이체의 의미
 - 2. 전자자금이체의 방식
 - 3. 전자자금이체와 지로이체 · 전자문서교환
- III. 법규정비의 필요성
 - 1. 법규의 필요성
 - 2. 규율의 방향
- IV. 법적 대응방안 : 입법론과 사안
 - 1. 거래약관
 - 2. 카드발급
 - 3. 사전수권이체
 - 4. 지급완료의 시점 · 지급위탁(수권)의 철회
 - 5. 단말기영수증 · 기간계산서
 - 6. 오류정정
 - 7. 이체거래의 하자
 - 8. 부정이체
 - 9. 금융기관 등의 책임
 - 10. 거래자료 기타 정보의 비밀보장
 - 11. 전자자금이체업과 업무감독
 - 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V. 마침말

* 暎園大學校 法政大學 教授, 法學博士

I. 정보화와 금융거래의 변화

정보를 처리·저장·보급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기초한 극소·광전자공학을 포함하는 정보기술은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각국에 있어서 컴퓨터와 통신은 이미 여러 해 동안 국민경제상의 정책의제로 되어 왔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보다 강력한 새로운 정보기술제도의 개발이 이루어져 정보통신망과 같은 유용한 장치의 보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컴퓨터통신망은 정보와 자료의 생성·분배에 있어서 보다 능률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기술적 지식 및 시장지식을 보다 집중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며, 탄력적이고 품질지향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사무실과 작업장에서의 정보기술의 발전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정보기술의 진보는 생산활동과 조직적·경영적 과정(때로는 가정에까지 연결된 PC통신망)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정보통신망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디자인, 생산 및 조직의 수단을 제공하고, 그리하여 경제적 능률을 높이고 시장에 상품을 가져오는 전통적인 수단에 변혁을 가져온다.¹⁾ 정보통신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도는 다양하다. Fax, E-Mail, EDI, EFT, Many-to-Many, Interactive Telephone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이들 새로운 제도는 정보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선두주자들이다.

정보통신망이 금융거래, 특히 그 중에서도 금전의 이동에 관하여 미친 영향은 획기적이다. 금전은 선사시대 이후 인류에게 많은 효용을 가져오고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금전은 제1차적으로는 교환수단으로서 존재하여 왔고, 초기에는 조가비, 소 또는 값진 금속과 같은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금은 지폐와 회계상의 금전 또는 예금이 교환수단으로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매혹적인 금속이다. 이제 이에 필적하는 비상한 금전혁명이 일어나고 있다.²⁾

1) OECD, *Information Networks and New Technologies : Opportuniti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1990s*(Paris: OECD, 1992), pp.13~14.

2) M. Stathopoulos, "Modern Techniques for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ir Effects on Currency", in *Modern Techniques for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ir Effects on Currency : General and National Reports*,

1950년대 초에 미국의 은행들이 매일 산더미와 같이 밀려드는 수표를 처리하기 위하여 은행업무에 컴퓨터를 도입한 이래, 자금의 이동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EFT)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후 각국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지급결제를 위하여 전자자금이체제도가 급속히 보급되었다.³⁾

우리 나라에서도 이 제도는 국민들이 거의 매일 이용할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현재 현금자동지급기(CD)의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자동입출금기(ATM)의 설치가 확대되어 그 이용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점포단말기(POS terminal)가 도입되고 있다. 또 CD공동망과 타행환공동망에 이어 한은금융망(BOK-Wire)⁴⁾이 구축되었다.

그리하여 자동계좌이체나 급여의 대량지급과 같은 사전수권이체가 행하여지고, 동일은행에서는 물론 타은행간에도 계좌이체가 실시되고 있으며, 직불카드거래가 개시되고, 금융기관간의 총액결제가 행하여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해저광케이블의 설치, ISDN서어비스,⁵⁾ 국제은행간통신망 운영협회(SWIFT)에의 가입⁶⁾ 및 위성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과 함께 전자자금이체(EFT)의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EDI와 EFT에 관한 사업은 증권업과 더불어 정보화시대의 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자금이체제도는 금융거래를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지급제도로서 앞으로 은행업무의 자동화 및 금융서어비스의 광범위한 제공을 위하여 널리 이용될 것이다.

장래에 컴퓨터, 판독분류기, 영상처리기 기타의 기술진보와 더불어 서면에

M. Stathopoulos, ed.(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5), p.4.

3) 자세한 것은 금융결제원, 『주요국의 지급결제수단』(1995.5) 참조.

4) 한국은행 금융결제부, 『한은금융망(BOK-Wire)해설』, 업무자료 95-1(1995.1) 참조.

5)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은 음성정보데이터화상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전화선 1개로 제공하는 종합정보통신이다.

6) SWIFT는 137개국 2,640여개 은행이 공동출자 운영하는 세계적인 은행간 통신망으로서 현재 5,300여개 금융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금융결제원이 1990년에, 한국은행이 1991년에 가입한 이래 1996년 6월 현재 83개 금융기관이 가입하였다. 『金融經濟』, 1996.7, 100면 참조.

기초한 지급제도가 소멸하고 전자자금이체가 이를 대체할 것이며, 나아가서 현금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추심 및 지급제도에서 서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급의 매개체로서의 서면을 없애고 이를 전자적 충격과 컴퓨터기억으로 대체하는 제도일 것이다.⁷⁾

전자자금거래는 넓은 뜻으로는 자금의 전자적 이동에 관한 거래를 모두 포함하게 될 것이나, 본고에서는 좁게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뜻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입법론의 관점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II. 전자자금이체거래

1. 전자자금이체의 의의

일반적으로 자금이체라 함은 자금을 수수할 당사자 사이에 현금을 이동하지 아니하고 장부상의 기장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입력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⁸⁾ 자금이체는 그 수단에 따라 서면자금이체와 전자자금이체로 나눌 수 있다.

서면자금이체는 자금이체가 서면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면에 의하여 처리되는 은행지로 및 우편대체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하여 전자자금이체는 컴퓨터와 연결된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신호에 의하여 입출금에 관한 자료가 전송되는 자금이체로서, “전자단말기, 컴퓨터, 자기테이프(M/T), 플로피디스크, 전화기 기타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자금이체로서, 고객이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차기(借記)하거나 대기(貸記)하라고 금융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의에 의하더라도 전자적 수단, 계좌 및 금융기관의 정의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에 포함되는 거래의 범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⁹⁾

전자자금이체를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개시되는” 자금이체라고 보는 입장

7) J. F. Dolan, *Uniform Commercial Code: Terms and Transactions in Commercial Law*(Toronto: Little, Brown & Co., 1991), § 25.3 참조.

8) 鄭東潤, 『어음·手票法』, 第4訂版(法文社, 1996), 701, 703면 참조.

9) 孫晉華, 『電子資金移替制度』(한국은행 인력개발실, 1995), 9면 참조.

도 있다.¹⁰⁾ 이 입장은 미국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s Transfers Act of 1978)¹¹⁾의 규정과 취지를 같이하는데,¹²⁾ 현재 자금이체의 종결단계에 해당하는 입금기장은 전자식으로 이루어지고 수기에 의한 입금기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진행단계가 서면에 의한 것인가 전자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으므로, 개시단계가 전자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전자자금이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서면자금이체와 전자자금이체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전자는 후자의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개념이며, 언젠가는 서면자금이체는 과거의 자금이체방식이고 전자자금이체는 현재의 자금이체방식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¹³⁾ 자금이체의 모든 단계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처리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전자자금이체는 자금이체와 동일한 개념이 될 것이고 “전자” 자금이체라는 용어가 필요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전자적으로 개시되는 자금이체만을 전자자금이체로 볼 때 전자자금이체의 정의는 물론 그 법률관계의 논의도 보다 명확하고 간편해질 수 있다. 그런데 결국 두 입장의 주요한 차이는 은행지로와 우편지로 중에서 전자적 수단이 도입되는 것을 전자자금이체에 포함시키는가 아닌가로 귀결될 것이다.

생각건대, 진행단계에 전자적 수단이 도입되는 자금이체를 전자자금이체에 포함시키는가 여부는 법률관계의 차이는 물론, 법률정책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자금이체의 진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개시되는 자금이체의 진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법률정책인 입장에서는 같은 규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금이체의 모든 단계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처리되는 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개시되는 자금이체만을 전자자금이체로 보는 데에 동의하지만, 현재로서는 자금이체의 진행단계에서 전자적 수단이 도입되는 경우도 전자자금이체에 포함시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0) 鄭敬永, “資金移替制度의 法的 研究”(법학박사논문, 서울대 대학원, 1994.2), 19 ~20면.

11) Title XX of Pub. L. No.95-630(1978), 15 U.S.C. § 1693 et seq.(1982).

12)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 § 903(6)(1978).

13) 鄭敬永, 전계 학위논문, 19면 참조.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전자자금이체에 속하는 거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① 현금자동지급기·자동입출금기에 의한 현금인출
- ② 자동입출금기에 의한 입금
- ③ 현금자동지급기·자동입출금기에 의한 서어비스이체
- ④ 현금자동지급기·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계좌이체
- ⑤ 직불카드[데비트카드]에 의한 이체
- ⑥ 은행지료업무 중 자기테이프(M/T)에 의한 일반계좌이체·대량지급거래·자동계좌이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처리되는 우편대체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다.
- ⑦ 타행환거래 중 현금송금 및 추심대전송금 등.

2. 전자자금이체의 방식

(1) 지급이체와 추심이체

전자자금이체는 이체지시의 방향에 따라 지급이체와 추심이체로 나눌 수 있다.¹⁴⁾

지급이체는 지급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그의 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수취은행에 있는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를 말하며, 대변이체(credit transfer)라고도 한다(예컨대, 전자단말기에 의한 계좌이체, M/T에 의한 일반계좌이체·대량지급거래, 타행환거래 중 현금송금).

추심이체는 수취인이 추심은행에 대하여 지급은행에 있는 지급인의 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자기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를 말하며, 차변이체(debit transfer)라고도 한다(예컨대, M/T에 의한 자동계좌이체, 타행환거래 중 추심대전송금).

14) 국제적으로 credit transfer와 debit transfer라는 용어가 관용되고 있고 국내 학자들도 대변이체와 차변이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필자도 이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나, 실무자와 일반인의 이해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급이체와 추심이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鄭敬永, 전계 학위논문, 13면 이하 참조.

(2) 동일은행내이체 · 2은행간이체와 3은행간이체

전자자금이체는 이체지시의 송달경로에 따라 동일은행내이체, 2은행간이체 및 3은행간이체로 나눌 수 있다.

동일은행내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이 동일한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전자자금이체이다(예컨대, 고객이 전자단말기에서 직접 개시하는 동일은행내의 계좌이체).

2은행간이체는 지급인과 수취인이 서로 다른 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고 두 은행이 직접 거래관계가 있거나 공통된 교환시설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전자자금이체이다(예컨대, 고객이 전자단말기에서 직접 개시하는 타은행간의 현금인출·계좌이체).

3은행간이체는 지급인과 수취인이 각각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고 두 은행이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거나 공통된 교환시설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제3의 은행을 매개로 하여 행하여지는 전자자금이체이다(국제간의 지급에 많이 이용됨).

3. 전자자금이체와 지로이체 · 전자문서교환

(1) 전자자금이체와 지로이체

가. 지로제도의 의의

지로제도는 중앙대체기관에 설정된 은행·우체국 또는 증권회사의 계좌를 통하여 각종 자금거래 내지 금융거래를 장부상의 이체방식으로 결제하는 제도이다. 지로제도는 은행을 통하여 하는 은행지로, 우체국을 통하여 하는 우편지로[우편대체]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하는 증권지로[증권대체결제]로 나눌 수 있다.

지로제도 중 은행지로와 우편지로만이 「현금없는 대체거래」로서 자금이체와 직접 관련된다. 지로에 의한 자금이체는 서면지시에 기초하여 행하여질 수도 있고 자기테이프 등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도 있다.¹⁵⁾

15) E. Ellinger, "The Giro System and Electronic Transfers of Funds", [1986] *Ll. M. & Com. L. Q.* 178.

우리 나라에서는 지로라는 용어를 은행지로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편대체(우편지로)는 취급기관이 우체국이고 중앙대체기관이 우편대체관리소라는 점이 은행지रो와 다를 뿐 그 기능은 같으므로, 그 법률구성도 은행지로와 같게 보면 될 것이다.

나. 전자자금이체와 지로이체의 관계

은행지로 중 자동계좌이체는 추심이체에 속하고, 그 외의 자금이체는 지급이체에 속한다. 또 은행지로에 의한 자금이체에 있어서 자금이체에 관한 지시가 자기테이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전자자금이체에 속한다. 한편 전자자금이체 중에서 현금자동지급기·자동입출금기에 의한 자금이체, 점포단말기에 의한 자금이체,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이체[전신망이체] 등은 지로에 의한 자금이체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로에 의한 자금이체는 자금이체보다는 좁은 개념이다.¹⁶⁾ 또 지로에 의한 자금이체는 전자자금을체를 포함하지만, 전자자금이체가 모두 지로에 의한 자금이체인 것은 아니다.

(2) 전자자금이체와 전자문서교환

가. 전자문서교환의 의의

전자문서교환 또는 전자자료교환(EDI)은 전자자금이체와 더불어 기업 및 대중매체에 있어서 정보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전문유행어가 되고 있다. 전자문서교환은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의 전자적 사업통신문(예컨대, 구매신청)의 이동이다. 기술적으로 EDI 통신문은 전자우편통신문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전송되며, 컴퓨터매체에 기록되거나 서면으로 인쇄될 수 있다.

EDI의 특징은 송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합의된 표준에 따라 그 통신문이 조직화되고 (일반적으로 영숫자문자로) 부호화되어, 서면·팩스·텔레스 또는 전자우편상의 데이터와 달리 수신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재고관리 소프트웨어와 같은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DI데이터는 송신인과 수신인의 컴퓨터 사이에서 ①데이터를 포함하고 있

16) 같은 취지: 鄭燦亨, “電子資金移替制度”, 經濟法學會 編, 『韓國金融法研究』(大京文化社, 1991), 295면.

는 컴퓨터테이프를 물리적으로 전달하거나 ②전화 기타의 원거리통신제도를 통한 연결에 의하여, 직접 이동할 수 있다. 또 대안으로서 EDI데이터는 부가가치통신망(VAN)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중개컴퓨터 통신망 또는 EDI 서어비스제공자를 통하여 이동할 수 있다.¹⁷⁾

EDI에 있어서는 운영상의 위험, 전자통신문의 신뢰성·확실성, 기록보관과 내부통제, 전자적 사기, 전자기록의 증명력 등이 문제되고 있다.

나. 전자자금이체와 전자문서교환의 관계

EFT와 EDI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특히 금융EDI(financial EDI)에 있어서이다. EFT와 금융EDI는 EDI운동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금융EDI는 전자자금이체를 행하기 위한 지시와 같은 기업과 은행간의 EDI를 말한다. 현재 물류사업의 EDI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EDI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앞으로 회사의 거래대금이 전자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결과 회사의 거래대금 지급은 금액이전[자금이체]과 송금통지라는 두 가지 통신문의 이동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는 두 가지 통신문이 함께 이동하는가 별도로 이동하는가이다. 금액이전은 은행제도를 통과하여야 하지만, 송금통지는 VAN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송달될 수 있고 여기에서 수취인은 수신한 두 가지 통신문의 일치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¹⁸⁾

Ⅲ. 법규정비의 필요성

1. 법규의 필요성

전자자금이체제도의 보급 및 이용도의 증가에 따라 각국에서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뉴우질랜드,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그 예이다.¹⁹⁾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전자자금이

17) B. Wright,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2nd ed.(Boston: Little, Brown & Co., 1995), §1.1.4.

18) cf. Wright, *Ibid.*, §2.5.

체에 관한 규율의 국제적 통일을 위하여 1987년에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지침”²⁰⁾을 마련하고, 또 제25차회기(1992.5.4~22, 뉴욕)에서 “국제간의 지급이체에 관한 모범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²¹⁾을 성안하였다.²²⁾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하여는 물론 서면자금이체에 관하여도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고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주로 금융기관 또는 카드발행자가 정한 약관 또는 그들 사이의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현재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판례는 거의 없고, 민법·상법 등의 일반사법은 전자자금이체거래를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기에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다. 그 결과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사고나 분쟁과 관련하여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고객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앞으로는 국제간의 전자자금이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국제간이체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와는 달리, 중개은행을 통하여 자금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나라에 따라 EFT제도나 기술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국제간이체에 있어서는 국내의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없는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제도상의 위험도 국내이체의 경우보다 심각하다.²³⁾

다음으로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약관은 전자자금이체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예컨대, 카드의 분실·도난)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규정이 대부분 흠결되어 있고 관련된 일부 규정도 불명확·불충분하거나 고객에게

19) OECD, *Electronic Funds Transfer: Plastic Cards and the Consumer* (Paris: OECD, 1989), p.110 이하; 孫晉華, “電子資金移替에 관한 立法例”, 暎園大『法學論叢』, 창간호(1994.1), 90면 이하 참조.

20) UNCITRAL, *Legal Guide on Electronic Funds Transfers*, U.N. Doc. A/CN.9/SER.B/1(N.Y.: U.N. Publication, 1987)(이하 “*Legal Guide*”로 인용한다).

21) A/47/17, UNCITRAL YEARBOOK, Vol. X X III: 1992(N.Y.: UN, 1994), Annex II.

22) 번역 및 해설에 관하여는 孫晉華, “國際間의 貨邊移替에 관한 模範法,” 안동섭교수 회갑기념『商去來法の 理論과 實際』(세창출판사, 1995), 163면 이하 참조.

23) 岩原神作, “電子資金取引に關する法制整備の必要性和課題[第一回]”, 『金融法務事情』, No.1203(1988. 10), 7頁 참조.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있다.

약관 일반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1989.12.31 법률 제3922호)이 적용되고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대하여도 이 법률은 적용되지만,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는 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현재로서는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약관 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약관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입각하여 그러한 약관의 효력을 부정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지만,²⁴⁾ 약관의 해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²⁵⁾

위와 같은 이유로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법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사고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이에 관한 법규의 마련이 긴급하다.

2. 규율의 방향

(1) 기본방향

현재 전자자금이체와 관련이 깊은 법률로 은행법, 신용카드업법,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등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기업규제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법률이다. 특히 신용카드업법은 원래 신용카드업에 대한 규제 위주의 법으로 제정되었는데, 후에 신용카드보유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몇 가지 조문을 신설하였다. 고객의 권리는 기업규제적인 입법에 의하여도 어느 정도 보호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고객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역시 실체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정도라고 보여진다. 이것은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또 최근에는 신용카드업법에 신용거래와 관련이 없고 순수하게 전자자금이체거래에만 이용되는 직불카드[POS카드]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였는데, 물

24) 鄭東潤, 전게서, 723면 참조.

25) 특히 약관에 의한 규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거래관계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나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둘째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는 경우 특히 고객보호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될 위험이 있다. 셋째로, 개개의 계약이나 약관에 의한 법적 처리나 대응은 비경제적이다. 넷째로, 당사자간에 결정하지 않은 문제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岩原神作, 전계논문, 7頁 참조.

론 직불카드의 정의에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라고 한정하고 있기는 하다(동법 제2조제2호 참조). 그런데 직불카드는 반드시 신용카드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독자적인 직불카드를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현금거래에 준하는 전자자금이체거래와 신용거래를 혼돈·오인하여 성질이 다른 두 가지 거래를, 더구나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한 것은 입법상의 과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와 같은 과오를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 법률에서는 거래당사자(고객·금융기관 등)의 권리·의무·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규율하고, 전자자금이체업에 대한 규제를 아울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신용카드업법 중 직불카드와 관련된 규정들은 새로운 법률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명실상부하게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법률이 되도록 함으로써 다가오는 정보시대를 대처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UNCITRAL의 모범법은 지급이체와 추심이체 중 지급이체[대변이체]만을 규율하고 있는데,²⁶⁾ 그 이유는 지급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적 추심이체[차변이체]는 국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데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초안과정에서 모범법은 우선 지급이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장래에는 추심이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초안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²⁷⁾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급이체는 물론, 추심이체에 속하는 자동계좌이체가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고 추심이체에 속하는 직불카드거래가 개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율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모범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지급이체를 규율하는 두 개의 법체계(국내의 지급이체에 적용되는 법체계와 국제간의 지급이체에 적용되는 법체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두 가지 법규칙을 조화시키거나 두 가지 지급이체에 관하여 모두 모범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²⁸⁾ 국내의 자금이체의 구조가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국내법의 원리가 모범법에 반영된 법원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결코

26) UNCITRAL 모범법 § 1 (2).

27) A/CN.9/297. paras.18, 19.

28) A/CN.9/WG.IV/WP.49, article 1, comment 12.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2) 소비자보호의 문제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법률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규율할 것인가, 아니면 고객의 보호와 은행(내지 금융기관)의 이해조정이라는 관점에서 규율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새로운 지급제도에 의한 현금이체에 따르는 제도상의 위험이다. 또한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손쉽게 입수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온라인에 의한 자금이체와 관련하여 화이트칼라 범죄는 이미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전자적 지급에 관한 법적 권리의무가 아직은 명백히 해결되어 있지 않다.²⁹⁾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규율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나라도 있다. 예컨대,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은 소비자계좌와 관련되는 전자자금이체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를 규율하는 연방입법으로서 소비자신용보호법(1968)³⁰⁾ 제9편에 편입되어 있다. 다만 신설된 통일상법전 4A편은 비소비자 이체 내지 대량적 이체인 전신망이체(wire transfer)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전자자금이체법과 이에 따른 규칙 E는 소비자관련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고, 통일상법전 4A편은 주로 상업적 내지 대규모 전신망이체에 적용된다.³¹⁾

29) E. H. Solomon, "EFT: A Consumer's View", in *Electronic Funds Transfer and Payments : The Public Policy Issues*, E. H. Solomon, ed.(Boston: Kluwer · Nijhoff Publishing, 1987), p.213.

30) Pub. L. No.90-321(1968), 15 U.S.C. § 1601 et seq.(1982).

31) UCC §4A-108에 의하면 EFTA가 적용되는 범위내에서는 UCC 4A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EFTA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소비자신용보호법 제9편에 추가된 입법으로서 특수한 분야에 적용되는 정책법규임을 고려할 때, UCC 4A편은 미국의 자금이체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볼 수 있고, UCC 4A편은 EFTA가 적용되는 범위내에서는 UCC 4A편의 적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소비자거래라 하더라도 EFTA에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UCC 4A편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鄭敬永, "美國 統一商法典 4A編上의 支給指示(payment order)에 관한 연구," 양승규교수 화갑기념 『現代商法の 課題와 展望』(三知院, 1994), 515~516면 참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전자자금이체거래에 있어서 제도상의 장애, 프라이버시보호 등의 문제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파악하기도 한다.³²⁾ 그런데 자동입출금기거래는 소비자와 관련되는 거래이기는 하지만, 모든 거래가 소비자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보호와 금융기관의 이해조정이라는 관점에서 규율함으로써 족하다고 볼 것이다. 전자자금이체거래의 규율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도외시킬 필요는 없지만, 은행 내지 금융기관의 고객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법적 규율을 함으로써 소비자보호의 목적도 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IV. 법적 대응방안: 입법론과 사안

1. 거래약관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약관은 은행의 보통거래약관으로 존재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³³⁾ 은행수신거래 기본약관에도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계좌이체에 의한 입금에 관한 제4조제2항, 예금의 성립시기에 관한 제5조제1항제3·5호).

중요한 상업적 계좌를 규율하는 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될 수도 있으며,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도 이체의 유형, 필요한 수권절차, 고객의 계좌가 차기 또는 대기될 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약관은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전자자금이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고객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또 금융기관 또는 카드발행자가 고객과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고객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금융기관 등이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요지를 설명하게 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

32) 金南漢, “電子資金去來制度에 관한 法的研究”(법학박사논문,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1992.2), 제4장 참조.

33)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약관으로는 현금카드이용규약, 신용카드회원규약, 타행 환거래약관, 지로번호신청약관, 대량지급거래약관, 자동이체거래약관, 전기요금 자동계좌이체 거래약관, 전화요금 자동계좌이체 거래약관 등이 있다.

된다.

[사안]

(약관의 내용 및 거래조건) ①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거래의 유형 및 내용³⁴⁾
2.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
3.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의 명세
4. 비밀번호의 선정·변경 및 안전유지
5. 부정이체에 대한 카드보유자의 책임
6. 카드의 분실·도난 또는 부정사용에 관하여 신속한 신고를 권유하는 취지
7. 부정이체에 관한 신고를 받을 자 또는 그 영업소의 전화번호³⁵⁾ 및 주소
8. 오류정정 및 분쟁해결의 절차에 관한 권리 및 그 내용
9. 단말기영수증 및 기간계산서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
10. 금융기관³⁶⁾의 책임
11. 계좌에 관한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요건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자금이체제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밀이 요구될 경우 자금이체의 회수 및 금액의 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약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관은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모범약관을 제정하여 금융기관 등에게 그 채택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내용 및 거래조건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약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관의 공개) ① 금융기관은 고객(“카드보유자” 또는 “이체의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약관 및

34) 자금이체의 회수 및 금액의 한도, 거래의 제한, 추가적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 등을 포함.

35) 영업시간외에서의 분실·도난을 신고하기 위한 전화번호를 포함.

36) 은행 기타 전자자금이체가 행하여질 수 있는 계좌를 직접·간접으로 보유하는 사람 및 시설을 말한다.

거래조건을 공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공개·설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령으로 정한다.

(약관변경의 통지·공고) ① 금융기관은 약관의 내용 중 거래조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이 효력을 발생하기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고객의 비용·책임을 증가시킬 때
2. 전자자금이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감소를 가져올 때
3. 전자자금이체에 적용되는 기간거래한도를 조정하려고 할 때

② 금융기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 이외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에의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그 변경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전자자금이체제도 또는 전자자금이체가 행하여지는 계좌의 안전을 회복 또는 유지하기 위한 긴급성에 따라 약관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이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변경의 통지·공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령으로 정한다.

2. 카드발급

전자자금이체카드는 비밀번호와 결합하여 자동입출금기·현금자동지급기·점포단말기 등의 전자단말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때 그 대금을 계좌로부터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지급장치를 말한다. 전자자금이체카드는 신용카드(credit card)에 대하여 데비트카드(debit card)³⁷⁾라고 불리고 있다.³⁸⁾

37) 데비트카드의 개념과 운영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孫晉華, 『電子資金移替制度』, 37면 이하 참조.

38) A. Lipis, T. Marschall & J. Linker, *Electronic Banking*(John Wiley & Sons, 1985), p.51; OECD, *Electronic Funds Transfer : Plastic Cards and the Consumer*(Paris: OECD, 1989), p.32; UNCITRAL, *Legal Guide*, pp.21~22.

우리 나라에 있어서 전자자금이체카드에 속하는 것으로는 현금카드(cash card), 자동입출금기카드(ATM card)와 직불카드(POS card)가 있고, 또 신용·현금겸용카드가 있다. 현재 신용카드의 이용도가 늘어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카드발행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용·현금겸용카드로서 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자금이체카드는 원칙적으로 신청 또는 대체의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³⁹⁾ 따라서 신청 없는 카드는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에 따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카드에 대하여 효력이 부여되기 전에는 그 부정사용으로 인한 위험은 카드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부정이체를 방지하고 카드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자금이체카드의 양도 등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

(카드 및 비밀번호의 발급) ① 카드발행자는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자금이체카드 및 비밀번호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전자자금이체카드 및 비밀번호의 갱신 또는 대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카드발행자는 전자자금이체카드 및 비밀번호를 발급함에 있어서 전자자금이체카드가 전자자금이체를 개시하는 데 사용되기 전에 카드보유자와 수령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수령확인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카드발행자는 전자자금이체카드가 카드보유자에 의하여 수령되었다는 증거로서 카드보유자의 정확한 주소에 대한 인도의 증거만을 원용하지 못한다.

(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전자자금이체카드는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이에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39)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 § 911; 뉴질랜드의 실무법전 §§ 3.2; 덴마크 지급카드법 §§ 14 1) 참조.

3. 사전수권이체

사전수권 전자자금이체(preauthorized EFT)는 급여·사회보장급부금 등과 같은 정기지급의 수령 또는 전기료·전화료·보험료·신용카드대금 등과 같은 정기청구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고객이 일정한 시기(보통 매월)에 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또는 그의 계좌로부터 출금할 것을 허용하는 전자자금이체를 말한다. 사전수권이체는 다시 사전수권 지급이체와 사전수권 추심이체로 나눌 수 있다.⁴⁰⁾

사전수권이체에 관하여는 지급수권과 대금청구서, 지급이체에 관한 지급통지, 출금가능시기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사안]

(사전수권이체) ① 사전수권이체 중 추심이체의 경우 수취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은 자금이체가 행하여지기 전에 이체의뢰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지급수권을 얻고 그 서면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취인은 이체에 예정일의 7일전까지 대금청구서를 이체의뢰인에게 우송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전수권이체 중 지급이체의 경우 이체의뢰인은 사전에 수취인에게 지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체의뢰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수취인에게 하는 입금통지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사전수권이체에 의하여 입금된 금액은 이체에정일의 오전 10시부터 이를 출금할 수 있다.

4. 지급완료의 시점·지급위탁(수권)의 철회

전자자금이체거래에 있어서 지급완료의 시점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설은 지급완료의 시점은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시기로 보아, 수취인의 계좌에 이체자금이 입금기장된 때라고 풀이하는 것이 보통이다.⁴¹⁾

40) R. Brandel & E. Olliff, "The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A Primer", 40 *Ohio St. L. J.* 531, 534(1979).

41) 李基秀, 『어음法·手票法學』, 1995년 개정법 신판(博英社, 1996), 564면; 鄭東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지급완료의 시점은 일반적으로 이체자금이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기장된 때이다. UNCITRAL의 모범법은 “지급이체는 수취인의 은행이 수취인을 위하여 지급지시를 인수한 때에 완료된다. 지급이체가 완료된 때에는 수취인의 은행은 지급지시를 인수한 범위내에서 수취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²⁾

생각건대, 지급완료의 시점은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시기로 볼 수 있고,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수취인의 계좌에 이체자금이 입금기장된 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금이체가 전자단말기 등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수취은행의 본점 또는 사무처리본부의 중앙컴퓨터에 수취인계좌에 관한 입금정보가 입력된 때(file이 갱신된 때)에 입금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급이체에 있어서의 지급위탁의 철회에 관하여 학설은 지급인은 수취은행이 이체금액을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기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이체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⁴³⁾ UNCITRAL의 모범법도 지급지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⁴⁴⁾

潤, 전계서, 719면; 鄭燦亨, 『어음·手票法講義』, 제1개정판(弘文社, 1995), 762면; 鄭燦亨, 전계논문, 309~311면.

42) UNCITRAL의 모범법 § 19(1).

43) 鄭東潤, 전계서, 706면.

44) 제12조 지급지시의 취소

(1) 지급지시는 취소지시가 현실의 실행기일과 제11조제1항 (a) 또는 (b)의 규정 [수취은행이 지급지시를 실행할 시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지시가 실행되었어야 할 초일 중 늦은 날 이전에 수취은행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시기 및 방법으로 수취인의 은행 이외의 수취은행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다.

(2) 지급지시는 취소지시가 대변이체가 완료되는 시기와 자금이 수취인의 처분에 놓이게 되는 날의 초일 중 늦은 날 이전에 수취인의 은행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시기 및 방법으로 수취인의 은행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송달자와 수취은행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발행한 송달자의 지급지시가 취소불가능하다는 것 또는 지급지시의 취소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시기보다 빠른 시점에 수령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

[(4) 이하 생략]

생각건대, 은행지로 중 일반계좌이체·대량지급거래·자동계좌이체 등의 경우에는 자금이체절차 중의 일부만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처리되므로 지급위탁의 철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⁴⁵⁾ 그러나 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계좌이체와 같이 전자자금이체가 전자단말기 등에 의하여 즉시 처리되는 경우에는 지급위탁의 철회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⁴⁶⁾ 추심이체에 있어서의 지급수권의 철회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⁴⁷⁾

[사안]

(지급완료의 시점) 전자자금이체에 의한 지급은 금융기관이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기장을 한 때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자금이체가 전자단말기 등에 의하여 즉시 처리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에 관한 입금정보가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사무처리본부의 중앙컴퓨터에 입력된 때 입금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지급위탁·수권의 철회) ①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지급위탁은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기장되기 전에, 그 지급수권은 이체의뢰인의 계좌에 출금기장되기 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자금이체가 전자단말기 등에 의하여 즉시 처리되는 경우에는 지급위탁·수권을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사전수권이체 중 추심이체에 관하여는 이체에정일의 3영업일전까지 지급수권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급위탁·수권의 철회방법, 그 철회에 따른 금융기관의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령으로 정한다.

45) 일반계좌이체업무 세부처리지침(동지침 6. 라.) 및 대량지급업무 세부처리지침(동지침 3. 1))은 「계좌이체통지서」가 수납점으로부터 금융결제원에 송부된 후에는 이체의뢰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지급인을 구속하는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46) 타행환공동업무 세부처리지침 제4절 2. 참조.

47) 자동계좌이체업무 세부처리지침 4. (1); 일반계좌이체업무 세부처리지침 6. 라. 참조.

5. 단말기영수증 · 기간계산서

전자자금이체거래의 기록에 관한 것으로는 단말기영수증(terminal receipt)과 기간계산서(periodical statement)가 있다.

실무상 단말기영수증에 관하여는 약관이 대체로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교부가 잘 시행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약관은 단말기영수증의 내용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기간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전자자금이체, 즉 입출금에 관한 기록을 나타내는 서류이다. 기간계산서는 고객으로 하여금 가계경제 · 기업회계에 대한 정기점검을 가능하게 하고 오류(error)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기간계산서를 송부하고 있지 않다.

단말기영수증에 관하여는 그 제공의무 및 기재내용을 명시하고, 48) 기간계산서에 관하여는 일정한 거래기간을 정하여 거래명세서나 그 사본의 송부 또는 교부를 의무화하고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도 명문의 규정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9) 또한 단말기영수증이나 기간계산서상의 기록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하여도 아울러 규정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0)

[사안]

(단말기영수증) ① 금융기관은 전자단말기에서 전자자금이체가 완료될 당시에 당해 거래의 내용을 기록한 영수증(이하 "단말기영수증"이라 한다)을 카드보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자금이체가 완료될 당시에 단말기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전자단말기를 운영하는 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서면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단말기영수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거래금액 및 수수료

48)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 § 906(a); 뉴질랜드의 실무법전 § 6.1; 오스트레일리아의 권고절차 § 4.1; 덴마크 지급카드법 § 15 참조.

49)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 § 906(c); 뉴질랜드의 실무법전 §§ 7.1, 7.2; 오스트레일리아의 권고절차 §§ 4.2, 4.3 참조.

50)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 § 906(f) 참조.

2. 거래일 및 거래시간
 3. 거래유형
 4. 계좌번호
 5. 카드보유자 또는 전자자금이체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 또는 부호
 6. 전자단말기 또는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또는 부호
 7. 예금잔액
 8. 계좌간이체 또는 점포단말기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9. 기타 거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 ③ 금융기관은 카드보유자가 수개의 전자자금이체를 한 경우에도 한 개의 단말기영수증을 제공할 수 있다.
- ④ 금융기관은 전자단말기를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단말기영수증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자단말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전자자금이체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단말기에 용지가 소모되어 단말기영수증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말기영수증의 방식·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령으로 정한다.
- (기간계산서) ① 고객의 계좌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전자자금이체가 행하여지는 계좌에 관한 정기계산서(이하 “기간계산서”라 한다)를 매분기별로 고객에게 우송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기간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전자자금이체 이외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 거래금액
 2. 거래일
 3. 거래유형
 4. 계좌번호
 5. 전자단말기의 위치
 6. 계좌간이체 또는 점포단말기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성명
 7. 계좌에 관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8. 거래기간의 시기 및 종기에 있어서의 예금잔액

9. 오류의 문의 또는 통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주소 및 전화번호
 10. 사전수권이체에 있어서 사전의 지급통지가 행하여지거나 대금청구서가 우송 또는 교부되는 경우에 전자자금이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호출할 수 있는 전화번호
 11. 기타 거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 ③ 금융기관은 두 개 이상의 계좌에 관하여 한 개의 기간계산서를 우송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 ④ 금융기관은 사전수권이체 중 지급이체만이 행하여지는 계좌에 관하여는 예금통장이 제시될 때 자금이체의 기록을 제공함으로써 기간계산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통장식 아닌 계좌에 관하여는 6월마다 기간계산서를 우송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서에 관한 계좌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계산서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령으로 정한다.
- (단말기영수증 및 기간계산서의 증명력) 단말기영수증 및 기간계산서에 기록된 사항은 전자자금이체가 그 기록된 바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카드보유자의 계좌에 행하여진 입금을 기록한 단말기영수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오류정정

오류(error)라 함은 전자자금이체가 고객의 이체의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널리 오류에는 금융기관의 직원·컴퓨터에러에 의한 계산착오 등에 의한 부정확한 전자자금이체, 전자단말기로부터의 부정확한 금액의 수령, 제8조의 단말기영수증 및 제9조의 기간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자금이체기록의 누락은 물론, 부정이체도 포함된다.⁵¹⁾

전자자금이체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의 그 정정절차에 관하여 현금카드이용규약 등의 약관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이를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다만 지로업무에 관하여는 세부처리지침이 오류정정과 지급점계좌불명시의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

51)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 § 908(f) 참조.

을 두고 있다.⁵²⁾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금융결제원과 참가은행간의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고 자금이체를 위탁하는 고객과 은행간의 오류정정절차 및 당사자의 책임을 정한 것은 아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진실에 맞게 바로 잡는 것이 순리일 것이나, 수많은 고객에 의하여 빈번하게 행하여지는 자금이체의 정확 여부를 카드보유자 또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힘들고,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오류를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오류의 정정에 관하여는 고객과 금융기관간 이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⁵³⁾

오류정정에 관하여는 오류통지의 기간·방식 및 내용을 정하고, 오류의 조사절차와 정정방법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⁵⁴⁾

[사안]

(오류의 통지) ① 고객은 전자자금이체의 오류를 최초로 나타내는 서류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그 신원·계좌 및 오류의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오류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통지의 접수자·접수번호·접수일 기타 통지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당해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고객이 구두에 의하여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오류의 조사 등) ① 금융기관은 오류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통지된 오류를 조사하고 오류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여 10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금융기관이 10영업일 이내에 통지된 오류의 금액(이자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를 포함한다)을 고객의 계좌에 임시대기(臨時貸記)하고 그 대기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통지한 경우에는 오류의 통지를

52) 일반계좌이체업무 세부처리지침 6. 가. 나. 다.; 대량지급업무 세부처리지침 3. 가.; 자동계좌이체업무 세부처리지침 4. (1).

53) 鄭東潤, 전계서, 721면.

54)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 § 908; 뉴질랜드의 실무법전 §§ 10.1~10.5; 오스트레일리아의 권고절차 §§ 7.1~7.5 참조.

받은 날로부터 45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은 통지된 오류가 카드보유자로부터 전자자금이체카드를 제공받은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고객 또는 이와 공모한 자에 의하여 사기적 의도로써 행하여진 결과 발생하였다고 믿는 데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임시대기되는 금액에서 5만원까지 유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구두에 의한 오류의 통지를 받은 후 고객에게 이를 확인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후 7영업일 이내에 그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의 계좌에 임시대기할 필요가 없다.

④ 금융기관은 고객이 주장한 오류를 그 조사 당시에 이용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 성실히 조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의 조사범위, 임시대기 및 그 차기(借記)에 따른 금융기관의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령으로 정한다.

(오류의 정정방법) ① 금융기관은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당해 오류를 정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의 대기를 포함한다)하고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정정통지의 서면을 고객에게 우송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한 후 3영업일 이내에 그 결정의 설명서를 고객에게 우송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며, 그 결정의 설명서를 받은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오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거로 한 기록의 사본을 즉시 우송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통지된 오류와 금액 또는 유형에 있어서 다른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금융기관은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와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의 정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주관부서]령으로 정한다.

(오류의 재주장 등) ① 금융기관이 오류의 조사 및 정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류의 주장을 철회한 고객은 오류를 최초로 나타내는 서류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다시 오류정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이 고객의 오류주장에 관하여 오류의 조사 및 정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는 그 오류와 관련하여 더 이상 오류의 조사 및 정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7. 이체거래의 하자

전자자금이체거래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민법상의 일반원칙이나 어음·수표법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면 거래의 성질상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

가. 원인관계의 하자

원인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인관계와 자금이체계약은 별개의 법률관계로서 독립된 것이므로 원인관계의 하자가 당연히 자금이체계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⁵⁵⁾ 특히 자금이체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신용카드거래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나. 이체지시의 하자

자금이체지시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조치이다.

① 이체지시의 부존재, 수취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이체, 지시의 위조·변조, 무권대리 등의 경우에는 이체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추심이체에 있어서 자금이체의 수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무능력자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5조, 제10조, 제13조)와 의사표시의 흠결·하자(민법 제107조~제110조)에 관한 규정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그 결과 이미 처리가 완료된 거래에 관하여 무효·취소의 효과를 받는 금융

55) H. Scott, "Corporate Wire Transfers and the Uniform New Payment Code", 83 *Col. L. Rev.* 1664, 1685(1983).

기관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는 어음·수표항변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⁵⁶⁾

② 자금이체가 무효로 되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취은행(또는 추심은행)은 수취인에 대하여 입금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미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당사자의 사망·파산

거래당사자의 사망·파산의 경우에는, 자금이체계약 또는 자금이체의 수권의 법적 성질은 위임이므로 전자자금이체거래는 종료한다(민법 제690조). 이 경우에 그 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92조) 은행이 선의인 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사안]

(이체거래의 하자) ① 전자자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무능력자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고객은 전자자금이체가 완료될 때까지는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자금이체가 전자단말기 등에 의하여 즉시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무능력자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전자자금이체는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전자자금이체가 완료된 때에는 금융기관이 고객을 해할 것을 알고 전자자금을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로써 금융기관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지급위탁·수권의 부존재, 수취인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이체나 지급위탁·수권의 위조·변조 또는 무권대리가 있는 경우 전자자금이체는 그 효력이 없다.

④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 또는 파산한 경우 당해 계약은 종료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의 사망 또는 파산은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6) 李基秀, 전계서, 561면 참조.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은 그 사망 또는 파산전에 위탁된 전자자금이체에는 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효력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수취인에 대한 입금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이체된 금액을 출금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8. 부정이체

카드보유자가 전자자금이체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이체(unauthorized transfer)가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는 카드발행자와 카드보유자의 이해가 대립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과실책임에 입각하여 고객의 과실 유무에 따라 책임을 결정한다면 카드를 분실한 고객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여야 하고, 은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의 법리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면책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고객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⁵⁷⁾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약관은 부정이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⁵⁸⁾ 신용카드규약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하여 신고의 시기에 따른 손실분담을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신고의 시기와 관련된 손실부담의 원칙을 정하고 있지 않다.

입법론으로는, 카드의 도난·분실의 신고 전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도난·분실의 신고전에 발생한 부정이체에 대하여는 고객이 일정한 금액 또는 부정이체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신고후에 발생한 부정이체에 대하여는 카드발행자가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⁵⁹⁾

[사안]

(카드의 분실·도난의 신고) ① 카드보유자는 전자자금이체카드를 분실하여

57) 鄭東潤, 전계서, 718면.

58) 예컨대, 국민현금카드 이용규약 제4조 (2); 환은현금카드규약 4.

59)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 § 909; 뉴질랜드의 실무법전 §§ 8.1, 8.2; 오스트레일리아의 권고절차 § 5.5; 덴마크 지급카드법 § 21 참조.

나 도난당한 때에는 즉시 카드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카드발행자는 카드보유자로부터 전자자금이체카드의 분실·도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의 접수자·접수번호·접수시간 기타 신고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당해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카드보유자가 구두에 의하여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카드발행자는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부정이체와 손실부담) ① 카드발행자는 카드보유자로부터 전자자금이체카드의 분실·도난의 신고를 받은 후에 발생한 부정이체의 금액에 대하여 그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카드보유자는 전자자금이체카드의 분실·도난의 신고전에 발생한 부정이체의 금액 중 5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실을 부담한다. 다만, 카드보유자가 전자자금이체카드의 분실·도난을 안 후 2영업일 이내에 이를 카드발행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카드보유자는 그 2영업일의 경과전에 발생한 부정이체의 금액 중 5만원까지의 금액과 그 2영업일의 경과후 분실·도난의 신고전에 행하여진 전자자금이체로서 그 2영업일 이내에 신고하였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을 카드발행자가 입증한 부정이체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손실을 부담한다.

③ 고객이 기간계산서의 우송 또는 교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기간계산서에 나타난 부정이체를 금융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기간계산서에 나타나거나 그 30일의 기간중에 발생한 부정이체의 금액 중 5만원까지의 금액과 그 30일의 경과후 부정이체의 신고전에 행하여진 전자자금이체로서 그 기간중에 신고하였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을 금융기관이 입증한 부정이체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실을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기간은 고객에게 당해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 연장될 수 있다.

⑤ 카드발행자 및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금융기관 등의 책임

금융기관·카드발행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도적 장애와 자금이체지시의 불이행·불완전이행이 문제된다.

먼저, 금융기관 등이 제도적 장애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카드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장애로 인하여 고객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고 그 결과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금융기관 등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⁶⁰⁾

다음으로, 이체가 전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이체금액이 부정확한 경우, 이체가 지연된 경우 등과 같이 금융기관 등이 자금이체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이행한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약관은 자금이체에 관한 고객의 의무·고객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의 카드발행자 등의 면책·관할법원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금융기관 등이 자금이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의 책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⁶¹⁾

제도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장애가 보수되고 전자자금이체가 실행될 수 있을 때까지 채무가 연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⁶²⁾ 자금이체지시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책임을 져야 할 행위, 불가항력 기타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명백히 할 것이 요구된다.⁶³⁾

[사안]

(금융기관의 책임) ① 금융기관은 전자자금이체의 불이행, 부정확한 금액의 전자자금이체, 지연된 전자자금이체 또는 지급위탁·수권의 철회에의 불응으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60) 뉴우질랜드의 실무법전 §§ 9.2, 9.7; 덴마크 지급카드법 § 22. 1) 참조.

61) 또 자동계좌이체에 관한 약관은 예금잔액이 없거나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은행이 자동납부처리하지 않아도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지급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면책조항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전기요금 자동계좌이체 거래약관 3.; 전화요금 자동계좌이체 거래약관 5.

62)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 § 912 참조.

63)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 § 910(a) 참조.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객의 계좌에 예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이체금액이 설정된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3. 이체대상인 자금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4. 금융기관의 행위가 불가항력으로 초래된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공유된 전자자금이체제도의 참가자인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배상에 있어서 당해 제도의 다른 참가자가 그 손해를 초래하였거나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전자단말기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을 경과하거나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중개기관의 책임) 중개기관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정보송달의 불이행·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통신시설의 고장 기타 제도상의 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도상의 장애와 채무연기) 고객의 채권자가 전자자금이체에 의한 지급을 수령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고객이 통신시설의 고장 기타 제도상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자금이체를 행하지 못한 때에는 고객의 채무는 제도상의 장애가 보수되어 전자자금이체가 행하여질 수 있을 때까지 연기된다. 그러나 고객의 채권자가 제도상의 장애가 발생한 후에 전자자금이체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거래자료 기타 정보의 비밀보장

전자자금이체거래의 자료 기타의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고, 카드발행자·금융기관 또는 중개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카드보유자·가맹점 기타

거래자의 거래자료 등의 정보를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다.⁶⁴⁾

[사안]

(거래정보의 제공) 금융기관은 [전자자금이체카드의 발급 및 관리와 관련한] 신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 또는 중개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기타의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거래정보의 비밀보장) 금융기관·중개기관 등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고객·수취인·가맹점 등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기타의 거래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중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기타의 거래정보를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서면으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한국은행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또는 중개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4. 동일 금융기관 또는 중개기관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4) 뉴질랜드의 실무법전 § 13.1; 오스트레일리아의 권고절차 § 11.1; 덴마크 지급카드법 §§ 24 1), 25, 26 참조.

11. 전자자금이체업과 업무감독

(1) 전자자금이체업

가. 가맹점

가맹점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카드의 발행자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보유자에 대하여 카드에 의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가맹점에 대하여는 카드보유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①전자자금이체카드의 정당한 사용 여부의 확인의무, ②전자자금이체거래에 대한 불이익대우의 금지, ③카드보유자에 대한 수수료전가(부담)의 금지, ④가장(허위)거래의 금지 등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부가통신사업자

현재 전자자금이체업무는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지만,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부가통신(VAN)사업자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은 금융기관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규는 이 기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전자자금이체업자에 관하여는 그 인가, 자본금, 업무의 종류 및 범위, 수수료율결정에 관한 원칙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다. 업무감독 등

전자자금이체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주관부서의 감독과 법률위반 및 감독상의 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관부서의 감독권을 위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의무 및 검사권을 부여하고, 금융기관 또는 중개기관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업무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업무정지,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청문).

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자금이체거래는 현금거래에 준하는 거래이므로 신용거래와 명백히 구

별되며,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다. 따라서 신용거래에 적용되는 법규와의 모순저축을 방지하고 겸용카드에 관한 법규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특히 신용카드거래를 포함한 신용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특히 필요한 사항은 ①전자자금이체카드의 발급과 신용카드의 발급의 관계, ②겸용카드사용에 의한 부정이체의 경우의 해결, ③전자자금이체거래에 신용거래가 포함되는 경우에 당해 거래에 관한 오류정정의 절차에 대한 적용법규 등이다.

V. 마침말

전자자금이체거래에 있어서는 종래의 서면자금이체의 절차 중 한 단계 이상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장차 자금이체가 개시되고 종료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처리되는 제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전자자금이체제도의 발전을 위하여는 은행업무의 자동화를 위한 금융기관 등의 의지, 고객들의 적극적 이용과 이 제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당사자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자자금이체제도는 은행업무의 자동화, 신속·정확한 금융서비스의 제공 등 유용한 기능을 하는 제도이지만, 아울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금융서비스의 비용 및 가격 결정의 문제, 경쟁과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고객선택의 제약에 관한 문제 등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프라이버시침해와 컴퓨터범죄의 문제가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거래약관·거래기록과 증명력·부정이체와 손실부담·오류정정·금융기관의 책임·제도상의 기능장애 등의 문제가 따른다. 또한 거래정보의 문제로서 약관의 공개·기간계산서의 제공·제도에 관한 교육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법적 규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는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에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의 입법·해석과 UNCITRAL의 모범법을 참작하여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정부에서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

이고 있는데, 相關기관들의 이해가 얽혀 法제정이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金融기관 기타 서어비스제공자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의 명확한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正當한 권리를 쉽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생겨날 것이다.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객과 金融기관 기타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전자자금이체거래와 相關된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 거래와 相關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법률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